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67
----------	-------

발의연월일 : 2026. 10. 12.

발 의 자 : 박용갑 · 장종태 · 이재관
이해식 · 소병훈 · 정준호
윤준병 · 허 영 · 조인철
어기구 · 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 각국은 ‘꿈의 암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양성자 치료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립암센터, 서울삼성병원이 양성자 치료기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우리나라 암환자의 50.4%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중입자·양성자 치료센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구축되어 지방에 사는 암환자가 중입자·양성자 치료를 받으려면 원정 진료를 감수해야 함.

또한, 국립암센터 양성자 치료기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산 기장군에 구축하고 있는 중입자치료센터를 제외하면 중입자·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자금 조달이 어려운 병원은 중입자·양성자 치료기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영국은 2012년 ‘국가 양성자 치료 프로그램(National Proton Beam Therapy Programme)’을 통해 맨체스터와 런던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했고, 네덜란드도 ‘양성자치료 규정(Regeling Protonen therapie)’을 통해 흐로닝언, 델프트, 마스트리흐트에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함.

또한,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을 통해 최장 30년간 연 1 ~ 2% 수준의 정책금리로 병원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병원에 대한 정책금융 제도가 없어 대다수의 병원들이 시중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하여 양성자·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8조의2, 제19조의2, 제46조제11호 및 제46조의2 신설 등).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제19조의2에 따른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를 말한다)의 지정 및 지원 계획

제2장제1절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사무국) ①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계획의 수립·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무국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

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를 “국립암센터”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중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를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역암센터 및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이하 “입자치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술의 선진성·접근성·적합성
2. 국민의 다층적인 의료수요 충족 가능성
3. 의료자원의 지역 균형
4. 연간 치료 가능 환자 수 및 전문인력 수

② 입자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암환자에 대한 양성자 치료 및 사후관리
2. 암환자에 대한 중입자 치료 및 사후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자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입자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자치료센터 지정 및 취소, 암환자에 대한 양성자·중입자 치료 및 사후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종합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입자치료센터의 양성자 치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금융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양성자 치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 양성자 치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 및 제2항에 따른 이자 지원의 대상,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중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5항”을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획이 포함되도록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③ ~ ⑤ (생략) <u><신설></u>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 센터(제19조의2에 따른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를 말한다)의 지정 및 지원 계획</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사무국) ① <u>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역별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 계획의 수립·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u>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사무국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u>

제9조(암연구사업)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⑤ (생략)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신설>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암연구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국립암센터-----

-----.

1. ~ 5.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역암센터 및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제19조의2(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
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양성자·
중입자 치료센터(이하 “입자치
료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술의 선진성·접근성·적
합성
2. 국민의 다층적인 의료수요
충족 가능성
3. 의료자원의 지역 균형
4. 연간 치료 가능 환자 수 및
전문인력 수

② 입자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암환자에 대한 양성자 치료
및 사후관리
2. 암환자에 대한 중입자 치료
및 사후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자치료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u> <u>3.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u> <u>④ 제1항에 따른 입자치료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자치료센터 지정 및 취소, 암환자에 대한 양성자·중입자 치료 및 사후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종합병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비용 지원) -----
1. ~ 10. (생략)	-----
<u><신설></u>	-----
	1. ~ 10. (현행과 같음)
	<u>11. 입자치료센터의 양성자 치</u>

<신 설>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
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
비 설치에 드는 비용

제46조의2(금융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에 양
성자 치료 장비 또는 중성자
치료 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
여 그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
료기관이 양성자 치료 장비 또
는 중성자 치료 장비를 설치하
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 및 제2
항에 따른 이자 지원의 대상,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청문) -----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